

기관명

수 신

(경유)

제 목 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 송부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.

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					
채용 · 고용 의무자	기관명				
	대표자명		전화번호		
	소재지				
취업 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5·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		
	성명		생년월일(성별)		()
	주소 (전화번호:)				
채용일 또는 고용일				퇴직(해임·해고)일	
근무부서		직종		직급 등	
월 평균급여액		근무기간		년 월 일	
퇴직 사유 또는 해임·해고 사유					
제 적 · 사 망 [] 인 수 · 합 병 [] 자 영 [] 근무조건 불만 []					
건 강 이 상 [] 고용조정(정리해고) [] 퇴 직 금 수 령 [] 무 단 결 근 []					
정 년 퇴 직 [] 임금체불(3개월이상) [] 능력개발·교육 [] 근무태만(불성실) []					
의 원 면 직 [] 용 역 전 환 [] 가 구 원 간 병 [] 부 정 행 위 []					
명 예 퇴 직 [] 거 주 이 전 [] 저 임 금 [] 범 죄 행 위 []					
기 간 만료 [] 회 사 이 전 [] 능 령 부 족 [] 그 밖의 사유					
휴 업 · 폐 업 [] 전 직 [] 적 성 부 적 합 [] []					
※ 유의사항 : 퇴직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한 가지 사유에 √ 표시를 하되,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